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2024. 10.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목 차

I. 개요	1
1. 목 적	
2. 관련 근거	
3. 용어의 정의	
4. 적용 범위	
5. 책임과 역할	
II.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4
1. 예방 활동	
2. 안전점검 및 훈련	
3. 위험상황 발생	
III. 중대(산업·시민)재해 대응	5
1. 재해 발생 보고	
2. 중대재해 발생 대응	
3. 중대재해 발생 후속조치	
4. 비상상황 행동 요령	
5. 유형별 응급조치 방법	
IV.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의무사항	12
1. 안전·보건 관련 법령	
2. 안전·보건 의무 사항	
IV. 관련 양식	36
1. 산업재해 조사표	
2. 사고 발생 보고서	
3. 재해자·목격자 진술서	
4. 사고(재해) 재발방지 대책	

I. 개요

1 목 적

- ☐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한 대처로 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및 피해 최소화

2 관련 근거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 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3 용어의 정의

- ☐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건물 및 사업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원료 또는 제조물”이란 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다음 각 목으로 정의한다.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 할 수 있는 것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
-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1·2종, 3종 일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적용 범위

- 우리 원(본원)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하는 시설 혹은 건축물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 그리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에 대해 적용

5 책임과 역할

- 경영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장)
 - 비상사태(안전보건, 재난·재해 등) 대비 조직 관리 책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예산 등을 지원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및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제한·사용금지 및 종사자 대피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중대재해가 발생한 부서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 관리감독자(부서장)
 - 비상사태 발생 시 처리에 대한 총괄 지휘
 - 시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제한·사용금지 및 종사자 대피
 -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
(사고발생보고서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이행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전담부서 안전관리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지침 마련 및 안내
 - 관리감독자로부터 보고받은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전사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평전개와 함께 성실한 이행 지원
- 보건관리자(안전보건전담부서 보건관리자)
 - 종사자를 보호하기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로부터 보고받은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전사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평전개와 함께 성실한 이행 지원

□ 안전보건담당관(건물담당자)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 사업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
- 사업장 시설물 안전점검 · 유지 및 지원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 · 보강 이행
- 사업장 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이행
-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제한 · 사용금지 · 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근로자, 상주직원, 수급업체 직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시설 이용 중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개선 요청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중지권 행사
-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관에게 보고
- 재해 예방에 대한 모든 법률과 규칙 준수 및 의무 수행할 책임

Ⅱ.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1 예방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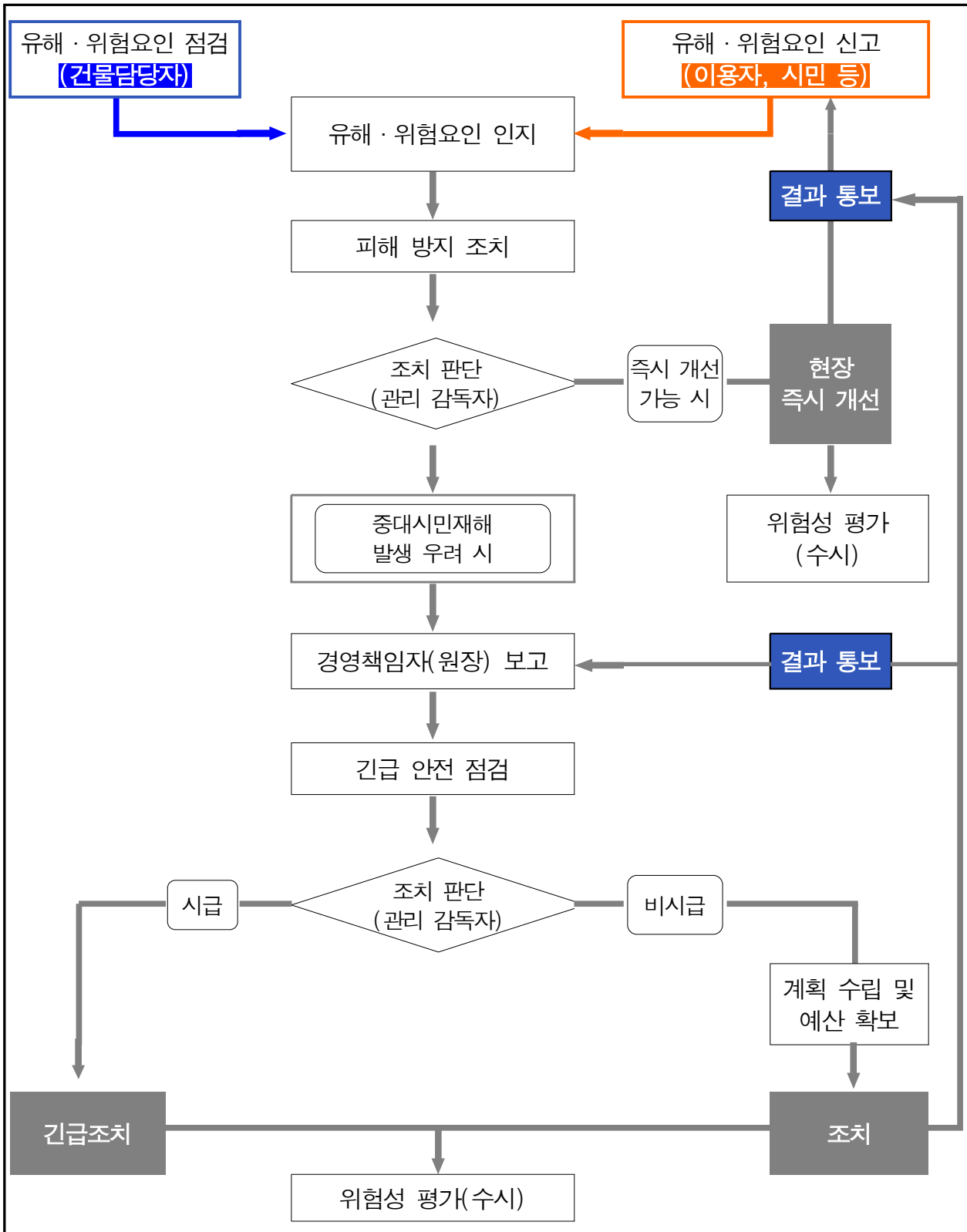
-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위험 요인 발굴·개선)
-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 ☐ 노후 시설 보수, 교체, 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 등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 ☐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유소전자 관리
- ☐ 이용시설 사용 안전 수칙 안내

2 안전점검 및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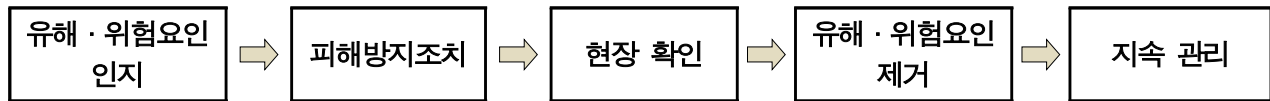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일정	비고
안전한국훈련	비상시 대처요령 및 피난 안내도 숙지 등	-	정부 방침
소방훈련	화재 및 비상 상황 대비 대피 훈련	연 1회	
민관합동소방훈련	관련기관 합동 소방 훈련	연 1회	
중점관리 위험시설 비상대응 훈련	가스 누출 사고 대응 훈련	2월	
중점관리 위험시설 비상대응 훈련	자체 지진대피 훈련	3월	
중점관리 위험시설 비상대응 훈련	태풍 대비 비상 대응 훈련	8월	
4.4.4. 안전점검	재난 취약지역 분야별 안전 점검	매월	4일, 14일 24일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 합동 점검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위생 분야	분기 1회	
정기 점검 및 검사	가스사용시설 정기 점검	3월	도시가스사업법
정기 점검 및 검사	승객용 승강기 정기 검사	3월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정기 점검 및 검사	실내 공기질 측정	4월	실내공기질관리법
정기 점검 및 검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5, 11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기 점검 및 검사	건물 소독	6, 12월	전염병 예방법
정기 점검 및 검사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 검사	11월	수도법

3 위험 상황 발생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 신고 체계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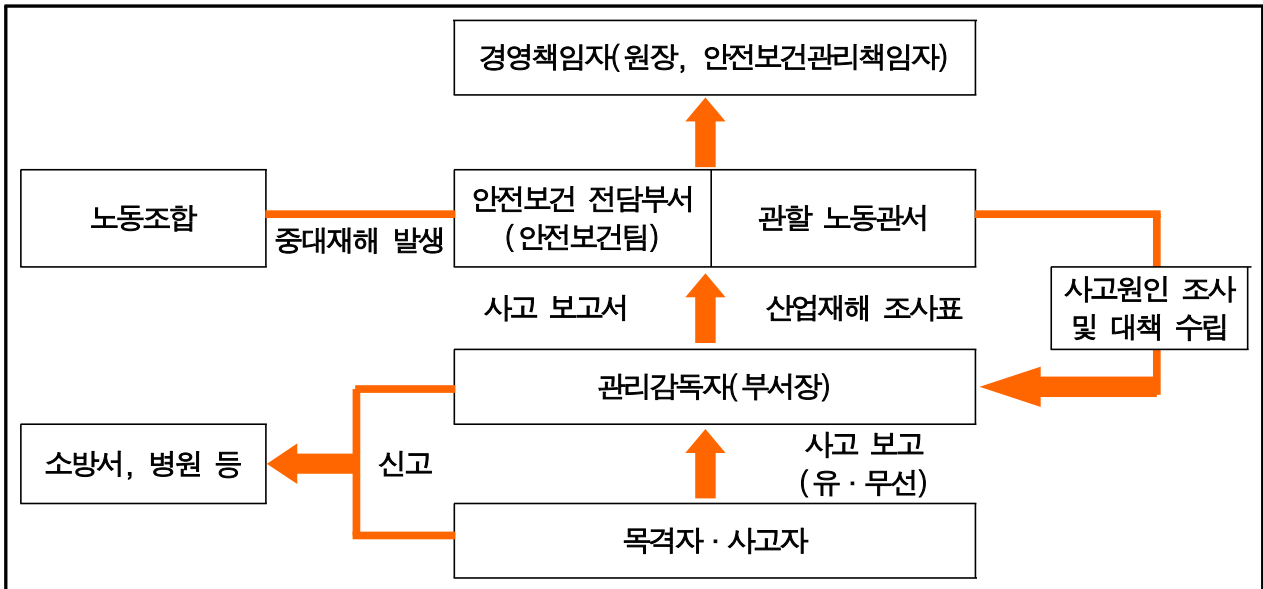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수행자
유해 · 위험 요인 인지	- 최초발견자는 유해 ·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혹은 건강상 이상증상 발견 시 해당 기관 담당자 및 위험상황신고 센터로 위험요인을 신고한다. - 담당자는 유해 · 위험요인과 건강상 이상증상에 대해 관리감독자 (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최초발견자
피해방지 조치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차 재해 방지로 근로자, 수급업체, 시민 등을 대피시킨다. 2차 재해 방지 조치 전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 위험요인이 중대재해로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상 증상자와 관련 인원을 파악하고 완료 전까지 격리 조치를 한다.	관리감독자
현장 확인	-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결정한다. - 유관 기관에 증상을 통보하고 전염 여부 등 위험성을 결정한다.	관리감독자 유관 기관
유해 · 위험 요인 확인 및 제거	-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작업을 실시하고 개선 조치한다. - 위험도가 높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팀으로 보고 후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 개선 조치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 후 업무를 재개한다. - 전염성이 없는 경우 작업을 실시하고 이상 증상의 원인을 파악 후 개선 조치한다. - 전염성이 높은 경우 유증상 인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 · 시행한다. - 유증상자 인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조치에 따라 행동한다.	안전보건팀 관리감독자 유관 기관
지속 관리	- 그 밖의 유해 · 위험 요인 여부를 확인 점검 한다. - 질병 유증상 인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관리감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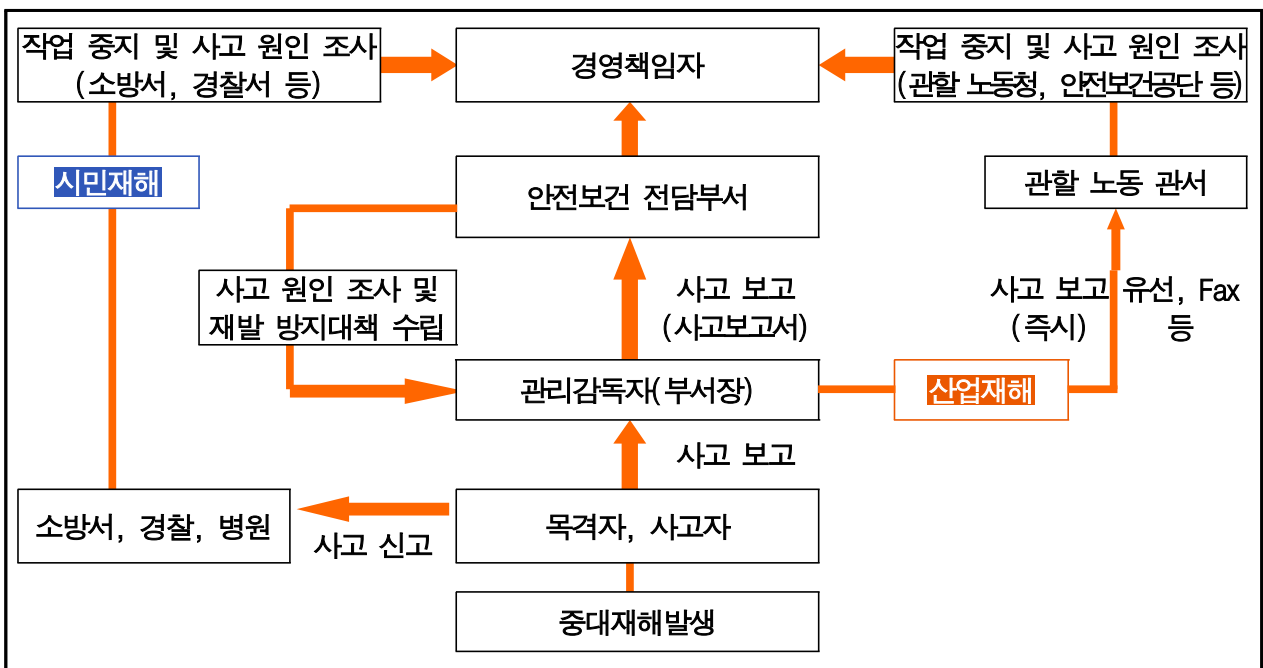
Ⅲ. 중대(산업·시민)재해 대응

1 재해 발생 보고

□ 사고 보고 체계



□ 중대재해 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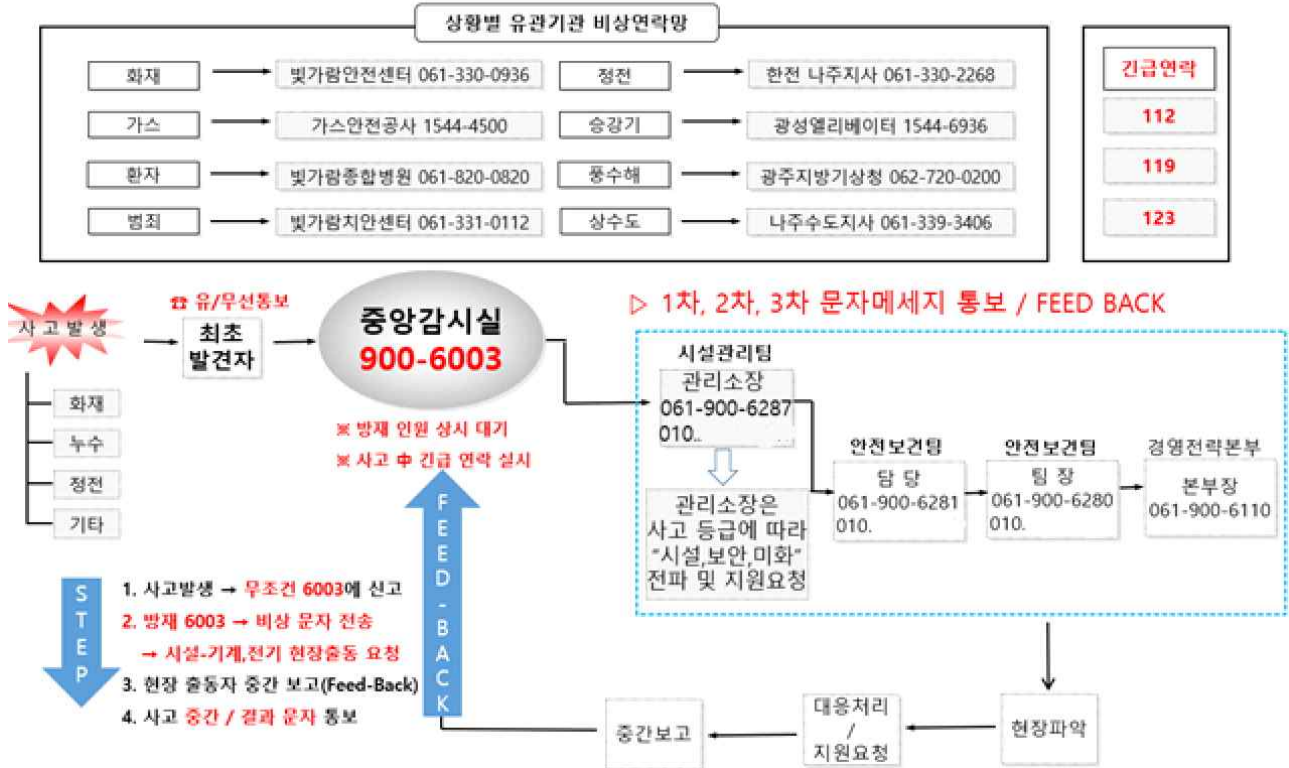


□ 관련법령에 따른 유형별 보고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 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응급 조치 (필요 시 병원 진료 · 이송)	응급조치 (필요 시 119 호출 및 병원 진료 · 이송)	
	작업 중지 조치	
안전보건전담부서 보고 (안전보건팀: 061-900-6280) - 사고 발생 즉시 유 · 무선 보고 (해당팀 관리감독자) - 사고발생보고서 제출 (사고 발생 1일 이내)	초기 대응 및 대피(필요시)	
	사고 발생 즉시 유선(전화) 보고 - 관할 노동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95) - 안전보건전담부서 (안전보건팀: 061-900-6280)	
	현장 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사고원인 조사 -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 해당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전담부서 사고원인 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사고원인 조사 -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 (산업재해) 관할 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기타 전문기관 사고원인 조사 - (시민재해) 소방서, 경찰서 등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수시 위험성평가 - 수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수시 위험성평가 - 수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작업중지해제 요청 - (근로감독관) 재발방지대책 등 현장 확인 (노동자 인터뷰 포함) - (작업중지해제위원회) 작업 중지해제 여부 결정 - (사업주)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 (1개월 내 매주 1회)	

□ 비상상황 · 재난재해 보고 · 전파 체계도

[나주본원 <비상상황·재난재해 보고·전파> 체계도]



□ 비상연락망[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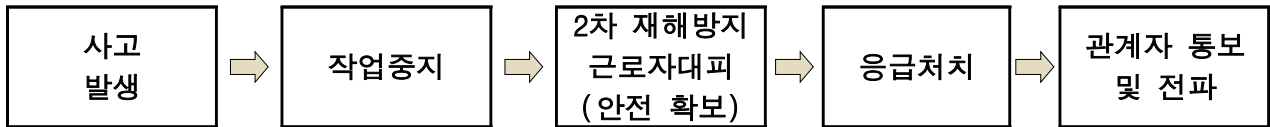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안전보건팀			관리감독자
				관리소장
				파트장

□ 비상연락망[유관기관]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비고
고용노동부				산재 신고
에스원				보안

2 중대재해 발생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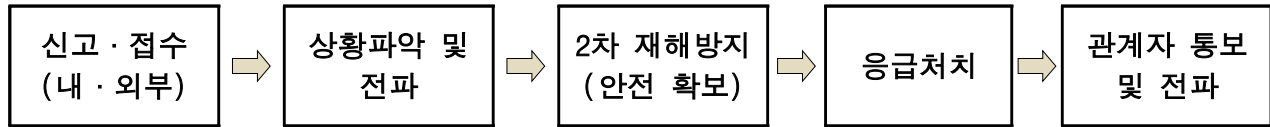
□ 중대산업재해



구 분	내 용	수행자
작업중지	• 사고 발생 시 해당 작업은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비상벨, 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큰 소리로 주변 근로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한다. • 사고발생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입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무너짐: 해당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발상 방지(누유 등) -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최초발견자
2차 재해방지 근로자 대피 (안전 확보)	•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물로부터 대피시킨다. • 사고현장으로부터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비상상황별 행동 요령 참조)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
응급처치	•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큰부상일 경우無理하게 옮기지 않고 119 등 지시에 따른다. • 사고가 경미한 재해인 경우 구급약품을 이용하거나 병원 진료를 한다. • 재해자가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유형별 응급조치 방법 참조) • 재해자가 심장박동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상황 조치를 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
관계자 통보 및 전파	• 최초 발견자는 휴대폰, 무전기, 유선 이용해서 발생장소 및 재해자 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 안전보건 전담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 경우 119 등에 즉시 신고한다. •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의 경비실, 방재실 등에 연락하여 즉시 도움을 구한다.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최초발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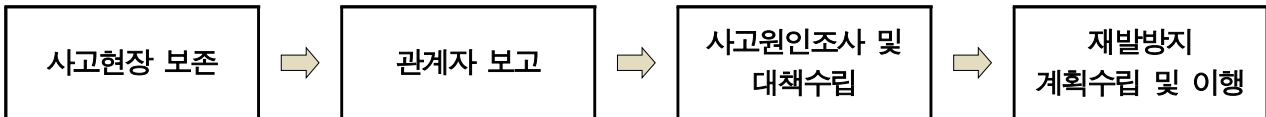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구 분	내 용	수행자
상황파악 및 전파	• 사고 신고·접수 후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 비상벨, 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큰 소리로 주변 근로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한다. • 사고 주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사고에 대해 피해 정도, 규모 등을 파악한다. • 건강상 이상증상이 발생되면 해당 사항을 담당자에게 유선·무선으로 통보한다. • 해당 근로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유증상자에 대한 인원을 파악한다.	최초발견자 현장담당자
2차 재해방지 (안전 확보)	•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험물로부터 대피시킨다. • 사고현장으로부터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자 대피 등 위험원을 보호 조치하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유증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유해인자(음식, 유해물질, 병원체 등) 접촉경로를 파악하고 관련 유해인자에 대해 별도 보관한다. • 원인·역학 조사를 위한 인체 검체 채취 등 필요시를 위해 해당 인원은 별도 격리 조치를 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
응급처치	• 사고가 경미한 재해인 경우 구급약품을 이용하거나 병원 진료를 한다. • 재해자가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장비를 이용하여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유형별 응급조치 방법 참조) • 재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큰 부상일 경우無理하게 옮기지 않고 119 등 지시에 따른다. • 재해자가 심장박동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상황 조치를 한다.	최초발견자 관리감독자 현장담당자
관계자 통보 및 전파	• 유·무선을 이용해서 발생 장소, 피해 정도, 규모 등을 소속 관리감독자(부서장), 안전보건 전담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의 경비실, 방재실 등에 연락하여 즉시 도움을 구한다.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최초발견자

3 중대재해 발생 후속 조치



구 분	내 용	수행자
사고현장 보존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CCTV 확보 - 사고 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절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 제한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관계자보고	•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사고조사를 보고한다. •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 • (시민재해) 사고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상이하여 별도 조사한다. • 주관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사고의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내용을 전사 공유하고 교육한다. • 유증상 인원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하며 모니터링 한다.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내용을 전사 공유하고 교육한다.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재발방지 계획수립 및 이행	• 재해근본원인을 조사하고 관리상/작업환경/절차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근본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재발방지 계획에 대한 이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해당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4 비상상황 행동요령

비상상황 ①	화재 시 대피 요령 (공통사항)
○ 최초 화재 발견 시 소화기나 소화전을 통화 초기 진압을 실시한다. ○ 화재가 심각할 경우 인근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한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 아래층에 불이 나면 연기는 위로 올라오니 옥상으로 대피한다. - 현재 위치에서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으면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 불길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한다. -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불길이나 연기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으로 대피하기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거울 경우 문 밖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찼다는 뜻으로 집 안에서 대피를 한다.	

비상상황 ②	화재 시 대피 요령 (장소별 대피요령)
	○ 공통사항 -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의 경우 30층마다 화염 및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피 안전 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한다. - 출입문을 열어 둔 상태로 대피할 경우 건물 안팎의 온도 차이로 내부 공기가 위쪽으로 빠르게 움직여 유독가스가 확산될 위험이 크므로 열려있는 문을 모두 닫으며 탈출한다. - 피난이 불가 할 경우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119에 신고합니다. - 또한, 대피 안전 구역은 통신장비와 비상Kit(방독면, 손전등, 의료장비 등)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피 안전 구역으로 이동하여 일정한 시간을 벌어 소방관을 기다리거나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화재 발생 - 피난용승강기 및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피하거나 피난 대비층으로 이동한다. - 상층부의 계단실과 전실(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실의 방화문 사이에 외기에 접하는 공간)의 문 등을 닫아 상층부로의 화재확산을 차단한다. ○ 중층부 화재 발생 - 연기가 이미 자욱한 상태로 옥상 혹은 저층으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얇은 판지로 만들어져 벽을 발로차거나 몸을 부딪히면 부서지며 이러한 칸막이가 없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몸을 피한다. ○ 상층부 화재 발생 - 본인이 불이 난 지점보다 아래에 있으면 피난용승강기 및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대피한다. ○ 의료시설(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 화재 발생 - 환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여 환자 특성에 따라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계단을 이용해 지상 1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구조대나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 화재 발생 초기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병실 환자들에게 큰 소리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지하철역 화재 발생 - 승강장의 비상통화장치 및 벽 등에 부착된 긴급연락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역무원에게 알리고 벽면 및 바닥에 부착된 통로 유도등을 따라 대피한다. - 화재 발생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며, 통로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선로 쪽으로 대피한다. (승강장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열차 내 화재 발생 - 객실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로 승무원과 통화하며, 차장 또는 기관사에게 화재 사실을 통보합니다. - 좌석 양옆에 위치한 비상코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양쪽으로 열어 개방한 후 대피한다. *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먼저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열고 뚜껑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긴 후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대피한다. ○ 터널 내 화재 발생 - 비상벨을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로 신고한다. -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하며,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시킨다. - 차량의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비상상황 ③	화재 시 대피 요령 (안전취약계층 대피요령)
	○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미리 피난안내도를 확인하고 보호자는 현 위치, 비상구, 소화기 위치, 피난 동선 및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다. - 대피 시 보호자와 함께 대피하며, 보호자가 없다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길을 모를 땐 벽을 이용하여 통로를 인지하고, 뜨거울 수 있으니 계단 난간은 만지지 않는다. - 안내견이 놀라 멈출 경우 견줄로 잘 이끌어주고 안내견과 분리되는 경우 주변에 안내견 정보를 알린다. ○ 청력이 좋지 않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 시각경보장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두고 시각경보장치 등을 통해 재난이 인지된다면 즉시 대피한다. - 화재를 인지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 ‘불이야’ 큰소리로 외치거나,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 등을 크게 두드린 후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 휴대폰 등으로 외부에 있는 보호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 및 현재 위치를 안내한다. - 119로 신고하거나 해당 지역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 등 알고 있는 비상 연락처로 신고한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 피난 방법 등 피난안내도를 확인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피난 대기 장소를 알아둔다. - 도움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고 혼자 있을 때 불이 난다면 호루라기를 이용하거나 소음을 내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휠체어 이용자라면 휠체어 안전띠를 사용한 후 대피하고 거동이 가능한 경우 엎드린 자세 등으로 대피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가슴으로 안거나 끌어서 대피하며, 침대에 의존하는 경우 안전조치 후 경사로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 척수장애인을 업으면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애 특성에 따른 대피 방법을 숙지한다. ○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기기 및 카드로 화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합니다. - 비상벨을 누르고 보호자의 손을 잡고 대피하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 갑작스러운 상황에 돌발 행동 시 침착하게 안정시키며 이동하고, 좋아하는 물건 등을 활용한다. -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있었을 경우 반드시 인원을 점검하여 확인한다.

비상상황 ④	지진 시 대피 요령 (공통사항)
	○ 지진으로 인해 흔들리는 시간은 1~2분 정도이므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잡는다.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이동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로 인해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한다. ○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 대피한다. ○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비상상황 ⑤	지진 시 대피 요령 (장소별 대피요령)
○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마트 등) -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한다. -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면 손잡이를 잡고 앉아서 버틴 후 침착히 벗어난다. ○ 극장 및 경기장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한다. ○ 학교 -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잡고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켜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니 창문과 떨어져 이동한다. ○ 고층 및 초고층 빌딩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책상이나 탁자 밑에서 대기하고 저층일 경우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고층에서는 무리하게 탈출하기 보다 건물 내부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 지하철 -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지하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하철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므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지하철역에서 정전이 되어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며, 서둘러서 출구로 뛰어나가는 것은 혼란의 원인이 되므로 구내방송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 차 안 - 차에 타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비워둔다. - 대피해야 할 때에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한다. ○ 의료시설(병원,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 - 1차적으로 일반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환자는 침상 아래나 침상 벽, 내부 화장실, 기둥 쪽으로 피하며, 병원의 내진 수준을 초과하여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대피한다. - 외래환자의 경우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으면 낙하물에 주의하며 대피해야 하고 건물 내에 있게 된다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직원의 경우, 재원 중인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최대한 피난과 안전에 주의하며 동시에 행동 하고 1차 시운전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환자를 대피한다.	

비상상황 ⑥	지진 시 대피 요령 (안전취약계층 대피요령)
○ 시력이 좋지 않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 우선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 대피가 필요하면 바닥에 낙하물이 있는지 점검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화기가 있는 장소의 점검 등을 요청한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 혼자서 행동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대피한다. -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를 잠근 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책·방석·베개 등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한다. -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리며, 야외 넓은 장소 또는 대피장소에 가지 않고 지택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관공서 직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한다.	

- 청력이 좋지 않거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 텔레비전의 자막방송과 휴대전화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호루라기 등으로 소리를 내어 장소를 알리고 도움을 받는다.
 - 주변 사람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필요한 배려를 받는다.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도구(종이, 펜 등)를 이용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 정신이 불안정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 서둘러서 급히 뛰어가거나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며, 가족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미리 정한 것을 준수한다.
 - 혼란스러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비상상황 ⑦

테러 시 대피 요령

- 테러 의심 또는 피해상황 신고
 - 테러가 의심되거나 피해 상황을 목격할 경우 정확한 위치와 테러 의심, 또는 피해상황, 현장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한다.
- 폭발물 테러
 - 폭발물 의심 물품이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 폭발물의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한다.
 -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화학·생물 테러
 - 눈물, 근육경련, 고열 복통,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오염 공기가 감지 될 경우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한다.
 -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한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대피하며,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어 응급조치를 한다.
- 핵폭발·방사능 테러
 - 핵폭발 섬광을 느끼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벌린다.
 -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며, 건물, 대피소 등으로 대피 후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히터·환풍장치 운전을 정지시킨다.
- 억류·납치 테러
 -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 응한다.
 -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 냄새, 범인 목소리, 이동할 경우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한다.
 - 구출된다는 희망을 갖고 최대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구출 작전 시 바닥에 엎드린다.
- 항공기 납치 테러
 - 당황하지 않고 납치범의 지시에 순응한다.
 - 납치범이 말을 걸면 조용히 대답하고 관심을 끄는 행동을 자제한다.
 - 구출팀은 테러범과 승객 구분이 어려우므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다.
- 무차별 총격 테러
 -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탈출 경로와 계획을 생각하며, 총소리가 들린 반대 방향으로 대피 한다.
 - 복도를 횡단하지 말고 벽면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탈출을 도우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 즉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숨으며, 숨은 곳의 입구를 잠그고 집기 등을 이용해 막는다.

비상상황 ⑧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대피 요령

○ 태풍 및 호우주의보 발령 시

- 태풍과 호우가 예보되었을 경우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수 조치를 한다.
- 현관문과 각각의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 파손을 막고 강풍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 많은 방은 피하고 되도록 유리창이 덜한 방에서 대기합니다.
- 옥상 배수로가 낙엽 등으로 막혀있다면 물이 차올라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상층의 배수로가 낙엽이나 다른 이물질로 인해 막혀있는지 점검한다.
- 위험한 물건이 건물 주변에 있으면 사전에 제거하며,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습니다.
- 건물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를 준비한다.
-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빠르게 대피하며,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한다.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는다.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침수 발생 시

-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한다.
- 물이 내부로 침범했다면 즉시 누전차단기를 내린다.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문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한다.

○ 지하주차장 침수 발생 시

-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한다.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한다.
-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한다.

○ 침수 발생 시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 요령

- 호우시 기상청 특보(호우경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한다.
-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설치한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을 금지한다.
- 대피 시에는 건물 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한다.

○ 침수 발생 시 차량 이용자 행동 요령

-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 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한다.
- 지하차도에 침수가 시작될 경우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않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합니다.
-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대피한다.

비상상황 ⑨

붕괴시 대피요령 (공통사항)

- 건축물 붕괴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시 대피한다.
- 대피장소로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주변의 안전지대로 비상대피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소방서, 경찰서 등에 구조를 요청한다.
-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에 도달한 이후에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단 이동하지 않고 대기하며,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확인한다.
-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에는, 추가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나 제방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폭우 또는 폭설 등 재해가 지속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및 물자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보하고 있는 물자는 아껴서 사용한다.

비상상황 ⑩

붕괴시 대피요령 (상황별 대피요령)

- 붕괴 건축물 내부
 -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재해취약자를 우선적으로 대피한다.
 - 부상자는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대피 후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축물에 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시키고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상자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건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하며,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때는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한다.
 - 잔해로 인해 이동이 불가할 경우 혈액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인다.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고 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를 요청하며,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기 소통이 가능한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아래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린다.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손전등을 사용한다.
- 붕괴 건축물 외부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한다.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 시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붕괴 건축물 매몰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으며,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한다.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려 구조를 요청합니다.
 - 휴대전화는 매몰자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에만 켜서 배터리를 최대한 절약한다.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비상상황 ⑪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대피 요령(공통 사항)

- 안내방송(방송시설, 앰프 등)을 경청하고,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시 안내사항을 숙지한다.
-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한다.
- 화학사고로 발생한 독성 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외에 있는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단,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지역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 사고 발생 지역에서 내 위치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직각 방향으로 대피한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고, 외부 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한다.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지역 주변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면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한다.

비상상황 ⑫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대피 요령

- 화학사고 발견 시 행동 요령
 -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 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 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한다.
 -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한다.
 -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실외 대피 시 행동 요령
 -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 발생 지역쪽으로 바람이 불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 사고 발생 지역에서 내 위치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한다.
 - 대부분의 고독성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 지면을 타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제외)
 -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면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한다.
 - 외부 대피가 필요한 경우 실내 및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닫고, 음식물의 외부노출을 피하고 실내에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 대피 시 전기와 가스를 모두 차단한다.

○ 실내 대피 시 행동요령

- 사고 발생 초기에 화학물질 누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한다.
-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한다.
- 사고장소와 인접한지역에서는 화학물질폭발에 대비해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대피한다.
- 실내에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한다.
-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방송 등을 확인 후 신속히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히터, 환풍기)의 작동을 중단한다.

○ 차량 대피 시 행동요령

- 차량을 타고 사고지역 주변을 통과할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순환은 내부순환으로 바꾼다.
-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중단한다.
- 유류, 인화성액체 유출 사고 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끈다.
-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동한다.
-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복귀 시 행동 요령

- 담당자가 복귀 안내를 할 때까지 안전한장소에서 대피하고, 복귀 후에는 즉시 환기한다.
(대피 시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뛰지 않는다.)
- 사고지역에서는 노출 된 식수나 음식물을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 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 (자가 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고 있던 옷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한다.

○ 소량의 화학물질 유출 시 대응 요령

- 용기가 넘어져 소량의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보호구 착용 후 누출 지역 인원을 대피 시킨다.
- 유출 장소, 시간, 물질 등 119 등 유관 기관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
- 화학물질 흡착포를 이용하여 벽세우기 등 외부 유출을 차단한다.
-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흡착포를 이용하여 제거를 한다.
- 화학물질이 묻은 흡착포는 지정된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작업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상황 ⑬

폭설 시 행동 요령

○ 실외

-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고 장갑·머플러를 착용하며, 미끄럼을 방지하는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이동한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특히 머리 보온에 유의한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리며, 눈길을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피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를 건넌다.

○ 차량 고립 시

- 출발 전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한다.
- 차량 고장 등의 상황에서도 즉시 도로 관리기관·경찰서·소방서에 연락한다.

- 비상시를 대비해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거나, 자동차 안테나에 묶어두고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다.
-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습니다.
- 매시간 10분 정도 엔진과 히터를 가동시키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자주 열어 둔다.
-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동승자와 차례로 수면을 취하며, 항상 한 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한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하게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쏴아 두고 대피합니다.

5 유형별 응급 조치 방법

재해 유형 ① 떨어짐, 넘어짐, 교통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다친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환자가 있는 곳이 위험한 위치가 아닌 한 완전히 고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 다친 부위의 위와 아래 관절을 모두 포함하여 부목(식판, 주걱 등 곧은 재료)을 활용하여 고정한다.
 - 목뼈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환자의 머리를 고정해주며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재해 유형 ② 끼임 · 베임 · 절단 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손상 부위에 출혈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다.
 - 출혈량이 많아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이 차가워지는 쇼크 현상 발생
 - 응급처치 요령
 -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출혈을 막아준다.
 - 출혈부분을 높여주고 안전되게 눕힌다.
 - 병원에서의 수술을 대비해서 절대로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쇼크방지를 위해 보온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절단 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지로 감싼다.
 - 거즈로 감싼 후 다시 큰 타올로 싼 후 밀봉하여 얼음과 물 1:1의 비율로 섞은 용기에 봉지를 담아 냉장 상태를 유지한다.
 - 환자와 함께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한다.

재해 유형 ③	충격쇼크(일사병, 열사병) 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난다. · 메스꺼움을 느끼며 구토나 헛구역질을 한다. · 맥박이 빠르고 약하며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심하면 의식이 없어진다. - 응급처치 요령 · 머리에 부상이 없을 경우: 하체를 20~30cm 높인다. · 가슴부상으로 호흡이 힘들 경우: 머리와 어깨를 높인다. ·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 차 등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경우, 수술을 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을 주지 않고, 환자가 심하게 원할 때에는 거즈에 물을 적셔 입 언저리에 대어준다.	

재해 유형 ④	이상온도 접촉(화상) 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1도 화상: 열에 의하여 피부가 붉어진 정도의 화상 · 2도 화상: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정도의 화상 · 3도 화상: 화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신경 및 조직의 파괴까지 동반된 화상 - 응급처치 요령 · 화상 부위의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근다. · 의복을 벗기지 말고, 화상 입은 곳을 처치하고 담요 등으로 환자를 덮고 안정시켜 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상처에 부은 의복은 병원에서 떼도록 한다. ·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쇠붙이 등 상처에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하여서는 안되며, 물집을 터트려서도 안된다.	

재해 유형 ⑤	전기 감전 사고
○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를 처치한다. - 주요 증상 · 전기쇼크에 의해 심장마비가 일어나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 증상을 나타낸다. · 전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에 상처가 생기며 특히 나오는 출구의 상처는 깊고 심하다. - 응급처치 요령 ·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환자를 처치한다. · 호흡정지 시 인공호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119구급대 도착할 때까지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는다.	

재해 유형 ⑥	가스 누출 · 중독 사고
	○ 재해자의 의식, 호흡, 자세, 맥박, 동공을 확인한다. ○ 구호장비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킨다. ○ 2차 재해(폭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부상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다. - 주요 증상 · 위통, 구토, 경련 · 현기증 및 의식 불명 - 응급처치 요령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 의복을 이완시키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에는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빨리 고엽

IV.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의무 사항

1 안전 · 보건 관련 법령

구분	분야	안전 · 보건 관련 법령
공중 이용 시설	공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시설소독(약칭: 감염병예방법)
	교량, 터널	도로법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규칙)
		도로의 유지 · 보수등에 관한 규칙
	하천	하천법
	상하수도	수도법
		하수도법
	건축물 (공통)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약칭: 승강기법)
		기계설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고나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건축물 (개별)	유기시설
		관광진흥법
		문화 · 집회시설
		공연법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약칭: 청소년활동법)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원료 · 제조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약칭: 먹는물검사규칙)

2 안전 · 보건 의무 사항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업무 내용
시설물 공통	시설물 안전법	법률	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11조	안전점검의 실시
			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
			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23조	긴급안전조치
			24조	시설물의 보수 · 보강 등
			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재난 안전법	법률	10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20조	재난상황의 보고
			24조	시 · 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5조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29조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34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34조의2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34조의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 · 활용
			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운영
			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 관리 및 훈련
			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70조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75조의2	안전책임관
			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 · 공제의 가입등
	자연재해 대책법	법률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방 등)
			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도시철도 등)
		고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행정안전부)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업무 내용
시설물 공통	지하 안전법	법률	10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관리 규정 제출)
			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지반침하 우려 시 등)
			36조	위험표지의 설치
			37조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40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감염병 예방법	법률	51조	소독의무(공중이용시설 등)
교량 터널	도로법	법률	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55조	도로표지
	도로 구조 규칙	부령	38조	도로안전시설 등
			39조	교통관리시설 등
			41조	방호시설 등
			42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44조	교량 등
	도로의 유지·보 수등에 관한 규칙	부령	3조	유지·보수등의 기준
			5조	안전점검
6조			보수	
9조			재해 대책	
하수도 시설 (공공 하수처리 시설)	하수도법	법률	12조	설치기준 등
			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20조	기술진단 등
			67조	교육
		훈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하천 시설 (하구둑· 제방·보)	하천법	법령	13조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25조	하천기본계획
			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부령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환경부)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업무 내용
건축물 공통	건축법	법률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 관리법	법률	1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13조	정기점검의 실시(다중이용건축물, 최초5년 이내, 매 3년마다)
			14조	긴급점검의 실시
			16조	안전진단의 실시(필요시)
			21조	사용제한 등(긴급조치 필요시)
			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23조	조치결과의 보고
			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46조	사고조사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8조	성능위주설계
			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전기안전 관리법	법률	11조	정기검사
			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업무 내용
건축물 공통	건축법	법률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건축물 관리법	법률	12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13조	정기점검의 실시(다중이용건축물, 최초5년 이내, 매 3년마다)
			14조	긴급점검의 실시
			16조	안전진단의 실시(필요시)
			21조	사용제한 등(긴급조치 필요시)
			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23조	조치결과의 보고
			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46조	사고조사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8조	성능위주설계
			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고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소방청)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전기안전 관리법	법률	11조	정기검사
			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의무 내용
건축물 공통	도시가스 사업법	법률	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6조의2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29조	안전관리자
			30조	안전교육
			43조	보험가입
	승강기 안전 관리법	법률	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30조	보험가입
			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기계 설비법	법률	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17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20조	유지관리 교육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수도법	법률	33조	위생상의 조치(대형건축물 급수설비 소독 등 위생조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14조	교육 및 훈련
			15조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
			22조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24조	대피 및 피난 유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	법률	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0조	개선명령
			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의무 내용
유기 시설	관광 진흥법	법률	5조	허가와 신고
			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33조	안전성검사
			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고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집회 시설	공연법	법률	11조	재해예방조치
			11조의2	안전관리비
			11조의3	안전관리조직
			11조의4	안전교육
			11조의5	피난안내
			11조의6	사고보고의무 등
			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고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체육 시설	체육시설 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4조의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11조	시설 기준 등
			24조	안전·위생 기준 등
		고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법률	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15조	안전점검 실시
			15조의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16조	안전진단의 실시
			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20조	안전교육
			21조	보험가입
			22조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고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의무 내용
수련 시설	청소년 활동 진흥법	법률	17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18조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19조	안전교육
노인 요양시설	노인 복지법	법률	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실내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8조의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도시 철도 차량	도시 철도법	법률	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부령	도시철도운전규칙(국토교통부)	
	철도 안전법	법률	6조	연차별 철도안전 시행계획 수립
			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25조의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38조	종합시험운행
			38조의2	철도차량의 개조 등
			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38조의6	철도차량정비 등
			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39조	철도차량의 운행
			39조의2	철도교통관제
			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
			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40조의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44조	위험물의 운송
			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의무 내용
도시 철도 차량	철도 안전법	법률	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61조2	철도차량 등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61조3	철도안전 자율보고
			69조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69조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법률	25조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26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27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28조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29조	정기점검의 실시 등
			30조	긴급점검의 실시
			31조	정밀진단의 실시
			32조	안전조치 등
			33조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35조	철도시설의 보수·보강·교체 등의 조치
			36조	시정명령
		고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국토교통부)	

분야	관련 법령		조항	안전보건의무 내용
원료 · 제조물	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19조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46조	조치명령 등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예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위험물 안전 관리법	법률	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17조	예방규정
			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9조	자체소방대
			28조	안전교육

V. 관련 양식

1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 (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 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일 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재해 발생 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⑲재해 발생 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⑳재발 방지 계획	
---------------	--

※ ㉑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공정

□□□

□□□

기인물

작업내용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발생보고서													
사 업 장 명													
사고발생부서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내 용	[발생원인(추정)]												
	• •												
재 해 자	[주요내용(5W1H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												
재 산 피 해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비	고
조 치 사 항	재 산 구 분												
	피 해 물 품 명												
사 고 사 진	주 요 피 해 내 용												
	비												
사 고 사 진	사 진 설 명 1												
	사 진 설 명 2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작성자 (서명)												

3 재해자 · 목격자 진술서

재해자 · 목격자 진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진술내용(5W1H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기술)		
• •		
위 진술 내용과 틀림없음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4 사고(재해) 재발방지대책

사고(재해) 재발방지대책		
사 업 장 명		
재 해 일 시		
재해발생개요	• • * 5W1H 방식으로 서술	
재해발생원인 (현상 파악)	• • * 재해발생 원인분석 (재해발생의 현상 또는 배경이 되었던 사실, 발생원인을 파악)	
재발방지대책	• • *재해방지대책 (주요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재 발 방 지 확 산 및 교 육	• •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파, 확산 계획 및 교육 실시 등	
관 련 사 진		
	개선 전	개선 후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작성자	(서명)